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 중국 -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첫걸음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 중국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기술유출의 유형과 기술보호 현황

2010~2017년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비중이 **중국 54%**, **일본 12.7%**, **미국 9.5%**로 중국이 가장 많이 발생

한국 기업 상대로 한 중국의 기술탈취 유형

상하이 GS社의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2013년)

- 상하이 GS社 엄모씨 등 3명이 다른 파트너와 함께 상하이 HD社를 설립, GS社의 영업비밀 침해
- 법원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40만 위안을 배상 받음

휴롬社, 특허 침해소송 (2016년)

- 휴롬社가 자사 "착즙기"의 특허 무효심판 과정 중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모조품 판매를 발견
- 중국 휴롬 지사가 독점권한으로 침해자를 직접 소송하여 신속히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로보카폴리 상표 침해 사례(2020년)

- 로이비주얼社의 캐릭터 제품에 대한 모조품을 팡저우 이거우마트에서 판매
- 로이비주얼社가 상표권과 저작권으로 이중 권리 확보 및 공증자료를 통해 법원 손해배상재판 승소

중국, 특허출원 강국, 영업비밀 보호 취약, 공격적 상표출원

영업비밀 보호 취약

- 2013년~2017년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 사건 총 338건 판결 중 원고가 사법보호를 받은 사건은 113건(33.4%)에 불과
-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발생 시 권리자의 증거 제시, 소송 후 2차 비밀 누설 등의 문제로 인하여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소극적

특허출원 세계 1위

- 2019년 중국 특허출원 140만 건(미국 62만 건, 일본 30만 건) 으로 세계 1위
- 특허 중심의 보호제도 운영

상표출원 세계 1위

- 중국에서 상표를 지식재산에서 지식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공격적으로 상표 출원

영업비밀 보호제도

중국은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상업비밀'이라는 명칭으로 영업비밀 보호

악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심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500만 위안까지 배상 가능

영업비밀의 구성 요건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 (비공지성) 공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 (상업가치)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 (비밀보호조치) 권리자가 대응되는 비밀조치를 취한
-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항

- 영업비밀의 예시로서, 설계, 절차, 제품의 배합, 제조방법 및 기술, 관리비결, 고객명단, 원재료 등의 출처정보, 판매전략, 원가계산서 또는 입찰서의 최저가격과 그 내용 등을 규정

각 업종의 대표적인 영업비밀

업 종	기술비밀	경영비밀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 소스코드, 설계방안, 소프트웨어 시제품, 테스트보고	고객정보, 입찰 자료, 관리 노하우, 가격정책
의료기기, 건강	개발성과, 약품조합, 실험기록, 실험결과, 제조공정, 시제품	고객정보, 제품 공급처, 원자재 리스트, 판매전략, 입찰 자료
광고, 문화, 예술	설계 창의, 문학 구상, 문화예술 창작자료	고객정보, 제품 가격, 활동 기획, 입찰정보
음식, 식품	조리방법, 배합, 조리공정, 제작방법	원료 공급처, 관리기교, 판매전략
컨설팅	평가 방안, 측정방법	고객정보, 가격정책, 업무관계 정보, 경영 전략
제조업	제조 공정, 제작방법, 제조 설비, 기술 파라미터	고객정보, 입찰자료, 경영전략, 가격정책

영업비밀 침해의 구제

민사적 구제

①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북경, 상해, 광주, 하이난에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담당

– 지식재산권 법원의 1심판결에 상소하는 경우 중국 최고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직접 담당

② 권리침해행위 소송의 경우 침해행위지 혹은 피고의 주소지 소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③ 입증책임 및 증거법칙 : 문서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公证)된 문서여야 하고, 중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것이면 해당국의 공증 및 중국대사관의 공증이 모두 필요

④ 악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서 배상,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 배상

형사적 구제

① 형법 제219조 상업비밀침해죄를 규정, 동법 제220조에서 타인의 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도 상업비밀 침해자로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둠

② 중국에서는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고소하고 법원이 수리하는 '자소(自诉)제도'가 있음

행정적 구제

「반부정당경쟁법」 제21조에서 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감독기관이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으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특허법 제71조

고의적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국 특허법 4차 개정, 2021년 6월 1일 실행)

① 징벌절 손해배상 :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의 허가 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행위의 성격 및 정도 등 요소에 따라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③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표법 4차 개정안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표법 4차 개정, 2019년 11월 1일 시행)

① 징벌적 손해배상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3배 → 5배로 상향, 손해배상액을 300만 위안 → 500만 위안으로 상향

②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 조항 신설

영업비밀 침해 대응 사례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영업비밀에 대한 악의적 침해 인정 사례

- 만뉴社는 2018년 5월 21일에 탄모씨를 고용, 영업비밀 의무를 명시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약정하고서. 컨설턴트로서 고객정보를 관리하게 함
- 탄모씨가 재직기간에 직무편으로 만뉴社의 고객정보와 서비스 수요 등 정보를 이렌社에 제공하여 고객유치를 도움
- 충칭 법원은 만뉴社의 고객정보에 고객 이름, 연락처, 거래 의향 등 정보가 포함되어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만뉴社는 탄모씨와 「노동계약서」를 통하여 비밀의무와 배상책임을 약정하였고, 만뉴社의 관리시스템에 고객정보를 접근하려면 독립된 계정과 패스워드를 통하여만 가능하므로, 법원은 만뉴社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
- 법원은 탄모씨와 이렌社가 만뉴社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주관적인 악의 침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을 고객 이탈로 인한 손실 금액의 3배인 7만 4,310위안과 침해 대응 비용 4,500위안을 만뉴社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함

비공지성 감정 의뢰 사례

기술관련 영업비밀 사건에서의 기술 사법감정 활용 사례

- 엄모씨 등 3명은 상하이GS社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입사 교육에서 비밀제도에 대한 교육 받음
- 2013년 8월, 상하이 GS社는 엄모씨 등 세 명이 다른 파트너와 함께 상하이 HD社를 설립한 사실을 발견, 현지 공상국(현재 시장감독관리국)의 조사에서 HD社의 엄모씨의 책상에서 상하이 GS社 사명이 적힌 도면 및 다수의 '자동 평판배양액 주입 생산라인'관련 도면이 발견됨
- 법원은 궈창딩청 지재권사법감정센터에 의뢰하여 발부받은 「사법감정의견서」의 내용을 채택하여 기술정보 중 공정 파라미터의 비공지성을 인정함
- 법원은 GS社의 「직원 수첩」, 「도면열람관리규정」, 「영업비밀관리규정」 본 사안의 '자동 평판배양액 주입 생산라인' 기술에 대해 비밀보호조치를 했다고 인정
- GS社가 기술관련 영업비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로서,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 입증을 위해 사법감정 기관에 비공지성 감정을 의뢰하여 입증에 유리한 증거로 확보

특허 침해 대응 사례

특허 침해 대응 사례 ①

한국 휴롬社, 특허 침해소송 사례

- 한국 휴롬社는 2014년 12월 17일, "착즙기" 특허를 받았으나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특허복심위원회 (특허심판원에 해당됨)로부터 전부 무효 선고를 받음. 이에 휴롬社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특허복심위원회에게 심결을 취소하고 재심리하라고 선고함. 이 상황은 "무효심사 과정 중"으로 특허권이 유효한 상태임
- 2016년 1월 휴롬社는 중국의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인 JD.com에서 판매되는 다수의 모조품으로 보여지는 "둬얼마YZ03" 원액기가 발견되어 공증구매하여 증거를 취득함.
-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모조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룽더그룹社, 룽더리샹社, 광마오社에게 즉각적인 침해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손해배상액 30만 위안 및 침해저지 비용 27,929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함.
- 휴롬社가 중국 현지 법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 사례로서, 중국은 외국인 관련 재판 시 위임서류부터 해당 국가의 공증과 해당 국가의 외교부 및 주재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함. 본 사건은 휴롬社가 자사의 중국 지사에 독점권을 부여한 바, 중국 지사는 그 독점권한으로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침해가 발생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함

특허 침해 대응 사례 ②

중국 현지 특허무효절차 과정의 증거규칙 및 증거본전 제도 활용 사례

- CHINT사는 1997년 중국 지식산권국에 '고분단 소형단로기' 의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1999년 등록, 슈나이더社에서 생산한 C65a, C65N, C65H, C65L, EA9AN 등 다섯 가지 제품이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고 2006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 슈나이더社가 중국 특허복심위원회에 본안 실용신안에 대해 무효 청구를 제기했으나, 실용신안권은 유효한 것으로 결정
- 슈나이더社와 CHINT社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대해 중지하기로 합의를 보고, 슈나이더社가 CHINT社의 해당 실용신안을 존중하며 CHINT社에게 보상금 15,570만 위안을 지불하기로 함
- 이는 현재까지 중국 특허 역사상 최대의 손해 배상 사건으로, 본안의 실용신안은 사실상 슈나이더社의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출원되어 등록되었지만, 중국 특유의 무효 절차 과정의 증거 규칙에 익숙하지 못한 슈나이더社가 자신의 기술 입증에 실패하여 패소함
- 본 사안은 증거보전 제도를 잘 활용한 대표 사례로서, 슈나이더社의 재무 장부를 증거로 압수 신청하여 손해 배상의 근거로 활용하여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상표 침해 대응 사례

로보카폴리 상표 침해사례로 본 대응방안

- 로이비주얼社는 2012년 7월 중국 상표국에 제28류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Robocar POLI' 상표를 출원하여 2013년 12월에 등록 받고, 2015년 11월27일에 캐릭터 'Amber', 'Roy', 'Poli', 'Helly'의 형상에 대해 중국 국가 판권국에 중국 저작권을 등록함
- 로이비주얼社는 중국 산동성 랴오청시에서 자사의 제품을 모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2019년 9월 로이비주얼社 측의 대리인을 통해 공증처에 증거구매 공증을 신청한 후, 팡저우 이거우마트에서 침해 완구를 구매하고, 2019년 9월 30일에 지불내역과 영수증 및 구매 과정 등의 내용 공증서를 발부 받음. 이어 2020년 2월 17일에 산동성 랴오청시 중급법원에 상표 및 저작권 침해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 로이비주얼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팡저우 이거우마트에 침해물품 판매행위 금지 및 재고 침해제품 폐기처분을 명령하고, 손해배상액을 7천 위안으로 산정하여 판결함
- 로이비주얼社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상표권과 저작권 이중으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침해 대응에 더욱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었음.

로보카 폴리

(중국 제11269861호 등록상표)

('Amber', 'Roy', 'Poli', 'Helly'캐릭터)

영업비밀 침해 대응 지침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회사 비밀유지규정 외 개별 직원과 '비밀보호 협의서'를 작성하라.

비밀유지규정은 기업 스스로의 요구이고 비밀과 연관된 개개의 직원과의 합의가 아니므로 보다 엄격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외에 별도로 개별 직원과 비밀유지 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경업제한 약정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라.

중국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제한' 사건을 노동사건으로 분류하고, '영업비밀' 사건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으로 구분 하고 있다. '경업제한 약정서'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경업제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의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1심에 모든 전력을 쏟아 부어라.

중국 판례에서, 당사자가 1심에 불복하여 상소 혹은 재심을 하여 소송결과를 바꾼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중국법원은 공증이 되지 않은 서면 증거는 진정성에 대한 별도의 증명을 요구한다. 특히 해외에서 형성된 증거일 경우, 해당 국가의 방식에 의한 공증 및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의 인증까지 요구하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중국인의 국민성은 소송으로 분쟁을 끝까지 다투려고 하기 보다는 통 큰 양보로 양자 간에 타협을 이루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식을 선호한다. 중국정부와 법원도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장려하여, 1심, 2심 및 재심 중에 모두 이와 같은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의 협의 내용이 소송 청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허락한다.

중국 법규를 준수하라.

중국 판례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권리자가 중국 법규를 위반하거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할 가치가 없으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 침해 대응 지침

중국에서 특허나 상표를 침해당했을 때 중국 특유의 '투트랙' 보호제도로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두 가지 기관을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의 장단점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 지방의 시장감독관리 행정기관을 이용해 단속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절차가 간단하고,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 • 침해자가 불분명할 때도 침해자의 탐색을 포함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권리자나 소비자 등의 고소가 없어도 침해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다.	•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 강제집행력이 있으며,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수단이다. •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 • 제소전중지, 재산보전 및 증거보전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침해자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 하여 사법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의 조정 권한만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따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절차가 어렵고,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 행정기관을 이용 | 흔히 '행정 단속'이라고 하는데, 소송에 비해 빠르고 즉각적인 행정 처벌이 가능하여 많이 이용됨

각 행정기관별 주요 단속 대상 행위

행정기관	단속 대상
시장감독관리국	• 상표권 침해행위 • 특허권 침해행위, 특허사칭행위, 특허 허위표시 • 원산지 표시 위반, 제조처 허위표시, 품질표시 허위표시 등 • 부정경쟁행위
세관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 사법기관을 이용 | 행정기관을 통한 단속으로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강제할 수 없어 침해행위를 중지시키려면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시도하려면 법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상표권 침해행위 대응 지침

상표권 선점의 대응

중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 상표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도 등록되므로 외국 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는 중국의 상표선점자들의 표적이 됨.

상표 선점 대응1: 무효선고 청구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상표권의 무효를 청구하는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무효심판 소송이 상표브로커로부터 등록된 상표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향후 협상 진행에도 유리함

상표 선점 대응2: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선점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었고, 3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상표 선점 대응3: 협상을 통한 구매

법적인 분쟁을 통한 해결 외에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매매협상을 통한 상표권 회수의 가능성도 열어 둠

상표권 침해 대응1: 시장감독관리국을 이용하는 방법

시장감독관리국을 통한 모조품 단속 절차는 ① 모조품의 발견, ② 모조품인지의 판정, ③ 조사 및 증거자료의 확보, ④ 단속 신청, ⑤ 급습, ⑥ 행정처벌의 단계를 거쳐 진행

상표권 침해 대응2: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방법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경우 통상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질량감독국에도 단속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핵심수칙

○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한다.

기술보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영업비밀 분류 및 취급,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파기,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 전 직원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모든 직원과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 전직금지서약서 체결해 기술을 지켜야 한다.

○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인력의 퇴직 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류/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받고 영업비밀 준수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자산(기술) 중 영업비밀을 파악하고 등급(극비/비밀/대외비)을 부여하고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요서류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료를 임의로 복제와 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한다.

○ 중요설비·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발 및 제조설비 지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카메라 및 스마트폰의 반입을 금지하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개발한 기술을 특허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허가된 USB 사용하기, 기술지킴이(보안관제)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자료를 지켜야 한다.

기술유출 주체 및 방법

| 기술유출 주체 |

내부인에 의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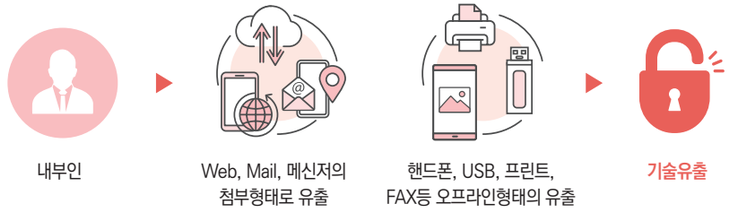

외부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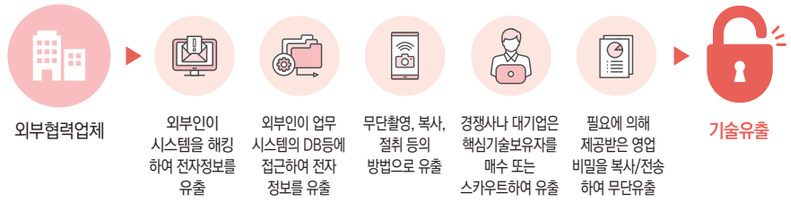

| 기술유출 방법 |

ON-LINE

- E-mail을 이용한 전자 문서의 전송, 웹 하드 등 P2P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공유, 메신저를 이용한 유출이 주요 이슈

OFF-LINE

- 기업의 감시망을 피해 노트북이나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법 반출하거나, 프린트나 복사물의 형태로 유출
- USB나 플래시 메모리 등 지능형 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유출이 증가

| 기술유출 경로 |

- 인력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이용한 기술 유출
- 거래업체를 통하여 부품 및 장비를 불법적으로 유출
- 합법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핵심인력 이동

기술보호와 인력관리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조직 내부의 인력관리이며, 재직기간 중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필요

채용자 관리 (신규, 경력)

- **(신규)** 도덕성, 범죄 및 개인파산 등의 법률적 이력, 입사동기 등 신상정보를 면밀히 검토
- **(경력)** 개인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이전 회사의 퇴직 동기, 이전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영업비밀을 서면 으로 제출토록 하여 동종 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재직자 관리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

- 입사, 교육, 부서배치, 프로젝트 투입 등의 경우에 모든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는 분쟁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업무의 범위, 신분, 기밀의 범위 등 명시)

전직/경업 금지 약정

-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정보(기술, 고객, 거래처 등)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약정

  * 핵심 기술인력 또는 임원에 한하여 체결 가능

- 통상 전직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이고 경업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2~3년임

사원증 관리

- 재직자와 외부 방문객을 구분하고 출입지역에 대한 차등적 제한 필요

퇴직자 관리

- 기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사직서 징구

  * 영업비밀 보유자 등 핵심인력이 퇴직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퇴사자가 재직 시 작성한 각종 서약서나 프로젝트 투입 기록, 전자파일 등을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중역· 보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보존

기술유출 발생시 대응 방안

유출사실 발생에 따른 보고

기술에 대한 침해 또는 유출사실을 발견한 경우, 간단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기업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보고순서] 발견자 → 소속 부서장 → 상급 부서장 → 대표이사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조사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또는 부서를 파악하고 과거업무 내역 및 핵심기술 접촉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

* 이메일, USB 등을 통한 자료반출 여부,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 및 수정 히스토리 조사 등 유출한 기술사용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해당기술의 개발 및 출시 등의 동향을 파악
* 의심되는 회사와 관계되는 내부 임직원 또는 부서의 과거 및 현재 행적 등을 조사

추가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 실시

영업비밀 침해를 자체적 확인결과 침해가 탐지되었거나 추가 침해가 예상 되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

* 내부직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 문서, 파일 등을 즉각 회수하여 추가 유출 방지

외부 직원 및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유출일 경우에는 회사 내부접근 및 네트워크 접속 등을 차단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침해 현장상황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물품은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비디오, 진술서 등을 신속히 확보

증거 신빙성을 위해 주체, 일시, 장소, 증거확보 경위 등도 포함해야 하고 진술서·확인서에는 본인 및 제3자의 서명도 필요(형사적 및 민사적 법적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조치방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법과 법적 구제방법이 있음